##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56

발의연월일: 2020. 7. 31.

발 의 자: 맹성규·박성준·이용호

박상혁 • 이성만 • 강민정

한병도 · 김영배 · 이은주

황운하 • 양정숙 • 김철민

배진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어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통하여 학대행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3(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죄를 지은 자(이하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과하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 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

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 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형벌과 병과하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3(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46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죄를 지은 자(이하
	"동물학대행위자"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
	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
	<u>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u>
	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
	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
	<u> 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u>
	<u>다.</u>
	② 동물학대행위자에게 과하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
	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
	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

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내용으로 한다.

-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⑥ 형벌과 병과하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